

분	근거법령	코드	⑥ 감면율	⑦ 대상세액	⑧ 감면세액	⑨ 한도총족 감면세액
124	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영 제79조의7제2항	11M			
125	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	법 제85조의2제6항 (2019.12.31. 제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1A			
126	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영 제96조제8항	13I			
127	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영 제96조의2제5항	13N			
128	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9의8제7항	11N			
129	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9의8제7항	13S			
130	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99조의10제5항	17D			
131	신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	영 제102조	124			
132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(철수방식)	영 제104조의2제3항	11F			
133	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(유지방식)	영 제104조의2제3항	11H			
134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4제5항	18I			
135	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4제5항	13P			
136	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5제8항	182			
137	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5제8항	13Q			
138	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5제8항	158			
139	기업도시·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97			
140	기업도시·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3R			
141	기업도시·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98			
142	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5제8항	11C			
143	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5제8항	13T			
144	금융중심지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6제11항	11G			
145	금융중심지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6제11항	13U			
146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7제8항	17A			
147	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7제8항	13H			
148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7제8항	17B			
149	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7제8항	13V			
150	기하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36제8항	1D1			
151	기하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 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36제8항	1C1			
152	기타		164			
153	세액감면 합계		1A4			

-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(⑩⑧, ⑩⑨, ⑩⑱, ⑩㉘, ⑩㉙, ⑩㉚ ~ ⑩㉛)에 대해 적용)
- ⑩⑧은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, 2019.1.1.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 (A방식)
 - ⑩㉘, ⑩㉙는 2018.1.1.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(A방식)
 - ⑩⑧, ⑩⑨, ⑩㉚ ~ ⑩㉛의 경우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, 2019.1.1.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(종전규정)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

⑩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
 * 감면받은 과세연도 / 감면세액: (/), (/), (/), (/), (/)

전체 감면한도 계산

A	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		
	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(⑪ × 50%)		
	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[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(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,000만원)]		
	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⑫ + ⑬)		
일반기업		서비스업	
B	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 자산 투자누계액		⑰ 일반감면한도 (=⑮)
	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(⑮ × 50%)		⑳ 고용기준 감면한도 (Min [a, b]) a 상시근로자 수 × 2,000만원 b 투자누계액(⑮ × 100%)
	⑰ 고용기준 감면한도 (Min [a, b]) a 상시근로자 수 × 1,000만원 b 투자누계액(⑮ × 20%)		
	⑱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⑯+⑰)		㉑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Max [⑰, ⑳])

㉒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(⑭ - ⑩) 또는 (⑱ - ⑩) 또는 (㉑ - ⑩)

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

구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⑳ 합계	㉑ 개월수	㉒ 상시근로자수 (=㉓ ÷ ㉑)	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	㉓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	㉔

감면한도계산 : 1억원 - 500만원 ×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

감면한도 (상시근로자 감소 적용전)	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	㉕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(㉓-㉔)	㉖ 감면한도 (1억원 - 500만원 × ㉕)
1억원	500만원		

⑥ 사회적기업·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

구분	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㉗ 합계	㉘ 개월수	㉙ 상시근로자수 (=㉗ ÷ ㉘)	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	㉚

감면한도계산 : 1억원 + 2000만원 × (취약계층 또는 장애인)의 상시근로자 수

감면한도 (상시근로자 적용전)	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	㉚ 상시근로자 수	㉛ 감면한도 (1억원 + 2000만원 × ㉚)
1억원	2000만원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(면제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1. 신청 내용별로 "⑥ 감면을"란, "⑦ 대상세액"란과 "⑧ 감면세액"란을 적습니다.
2. "⑥ 감면을"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.
3. "⑦ 대상세액"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.
4. "⑧ 감면세액"란: "⑦ 대상세액"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"⑨ 한도총측 감면세액"란: "⑧ 감면세액"과 "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(면제)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.
8. 근거법령란에서 "법"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"영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하며, "구 영"은 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.